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686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6860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29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298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9. 4. 12.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2020. 11. 11.경 이 사건 상가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31.경 보험사로부터 위 누수 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7,15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그중 3,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3,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3,750,000원은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¹⁾으로 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2,050,582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이익은 보험사의 출연행위로 인한 것으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해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피고의 영업손실 명목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 중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에 사용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판사 양철순, 판사 차민우

1) 소장 기재 청구원인 제2항의 제목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인 점, 해당 항목에 ‘피고는 나머지 3,750,000원으로 훼손된 천장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한다고 원고와 약속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택한다.